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실태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전문직 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Implications of Japan's adult guardianship system implementation status on South Korea

-Centering on the misbehaviors of guardians with specialized jobs-

이 충 은**
Lee, Choong-Eun

목 차

- I. 머리말
- II.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이용현황
- III. 일본에서 전문직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 실태
- IV.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V. 맺음말

국문초록

노령과 질병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무능력자 제도와는 달리 의사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자

논문접수일 : 2015. 11. 10.

심사완료일 : 2015. 12. 07.

게재확정일 : 2015. 12. 07.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1013906).

** 법학박사·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제주대학교 법학부 강사

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현시키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도 고령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성년후견제도가 향후 이루고 있는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건전한 형태로 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올해로 시행 15년을 맞이한 일본은 성년후견제도가 실시된 이래 후견제도의 이용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용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성년후견인의 배임과 착복 등 부정행위까지도 함께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각된 사건이 전부가 아닐 것이고, 성년후견제도를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부정행위를 가진 성년후견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날로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후견인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고, 경제적 불황 등으로 인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회적 상황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즉시 발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유혹에 더욱 쉽게 빠져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년후견 사건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배임과 착복 등 부정행위의 발생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 방지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일본, 성년후견제도, 전문직후견인, 후견신탁제도, 후견인감독센터

1. 머리말

노령과 질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노령과 질병은 사람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이다.¹⁾ 요보호

자는 성년후견제도가 사회안전망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만, 사회안전망을 담당하는 일부에서 피보호자를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성년후견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성년후견제도 시행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경과되었다. 대체로 순조로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친족후견인에 의한 업무상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친족후견인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직 후견인도 본인을 위한 재산관리라는 인식이 매우 약해서 후견인에 의한 배임·횡령 등 부정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²⁾ 이에 일본은 후견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고령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성년후견제도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바, 성년후견제도가 건전한 형태로 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실태를 통한 문제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반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미리 예견함으로써 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조금 다른 사안이지만, 최근 사무장이 소송을 맡긴 당사자의 합의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과 구성된 변호사들에게 역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는가 하면,³⁾ 과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친족회의 동의 없이 처분을 한 사례도 있었다.⁴⁾ 성년후견제도가 비교적 고액의 재산관리가 이

1) 박근수·이충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제도로서의 성년후견제도”, 『법학논고』 제4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2, 349면.

2)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10년 3월 17일자 참조.

3) 뉴스토마토 2013.12.10일자(<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25885>) 참조.

루어지고, 본인의 판단능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횡령사건의 발생 개연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성년후견제도의 실시 배경이 유사하고, 우리의 운용체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 방지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현황

1.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

일본은 1999년에 행해진 민법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정비되고 난 후, 15년이 경과하였다. 현재의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전자의 경우는 또 다시 ①후견, ②보좌, ③보조의 3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후견은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 사리변식 능력을 항상 상실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가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 성년후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게 하는 제도로써 종래의 금치산제도를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금치산자가 거의 모든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에 반해, 후견에서는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를 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행위에 대한 판단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이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 이외의 행위에 한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된다. 과거와 달리 배우자가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가정재판소에서 책임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또한 법인이나 복수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좌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리변별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하여 보좌인의 동의를 얻은 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종래의 준금치산 제도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보좌인이 선임되면 민법 소정의 중요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동의권·취소권이 부여되고, 당사자가 신청에

4)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3828 판결.

의해 선택한 특정 법률행위에 대하여 개별 심판의 대리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본인 이외의 자가 보좌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추가 동의권이나 대리권 부여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 존중의 이념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좌의 경우도 후견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당연히 보좌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재판소에서 적임자를 보좌인으로 선임한다. 보좌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 변별력이 불충분한 자를 조력하는 제도로 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가벼운 정신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⁵⁾ 이는 종래의 금치산자나 준금치산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가벼운 치매, 지적 장애, 정신장애 등의 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설된 제도이다.⁶⁾ 제정 당시, 특히 판단력이 저하된 고령자의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여 극히 주목을 받았으나,⁷⁾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이용실적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⁸⁾

2. 성년후견제도의 이용현황

2014년 기준 일본의 재판소가 수리한 심판건수는, '후견개시의 심판(취소 포함)'이 27,515건, '보좌개시의 심판'이 4,806건, '보조개시의 심판'이 1,314건이다.⁹⁾ 입법 당시의 예상과 달리, '보조'의 이용건수가 부진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긴 하지만,¹⁰⁾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3가지의 유형 모두 지속적인 증

5) 김상찬·이충은, “성년후견제도 입법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법과정책』 제15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9.2, 64면.

6) 일본에서의 지적장애는 일반적으로 18세까지 발육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억·판단·이해·사고·추리 등 지적기능의 발달이 통계학적으로 보아 명확히 늦은 상태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장애를 말하고, 정신장애라 함은 정신병에 의한 장애,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 조울증, 노년기정신병, 중독성 정신병(알콜성 중독 포함) 등을 말한다(長谷川泰造, “成年後見Q&A”, 有斐閣, 1998, 2面·25面).

7) 宮下修一, “現場にみる成年後見制度の問題點”, 『民事判例V』, 現代民事判例研究會編, 2012年前期, 112面.

8)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은 이충은·박규용, “일본의 실무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7집, 한국법학회, 2015.3, 210-211면 참조.

9)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 『成年後見關係事件の概況 -平成26年1月~12月-』, 2015 참조.

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은 성년후견인으로 주로 친족후견인과 전문직 후견인(제3자 후견인)이 선임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친족후견인을 선임하였으나, 친족후견인 선임건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제3자 후견인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¹¹⁾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이 발표한 ‘성년후견 관련사건 개황-2010년 1월~12월’ 통계에 따르면, 28,606건의 성년후견 사건 중 친족후견이 59%로 상당비율을 차지한 반면, 제3자 후견의 경우는 사법서사가 16%, 변호사가 10%, 사회복지사가 9%, 법인 성년후견인이 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¹²⁾ 이에 비해,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34,373건의 성년후견 사건 중 친족후견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급감했으며, 전문직후견인은 6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년후견제도 시행 초기에 친족후견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가족 공동체 내에 있어서의 문제는 가족구성원 사이에 처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한,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반대로 제3자 후견인이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는 개인주의 성향의 증가, 제3자인 전문가를 선임함으로써 적게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발생으로 본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부족하고,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자에게 친족 등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친족후견과 전문직 후견 이외에 시민후견인을 양성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¹³⁾

10) 보조제도가 입법당시와 달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新井誠・赤沼康弘・大貫正男編, 『成年後見制度-法の理論と實務』, 有斐閣, 2006, 8-9面 參照.

11) 일본의 성년후견인 선임 유형(단위: %)

구분	2000	2001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친족 후견인	91.0	86.0	...	63.5	58.6	55.6	48.5	42.2	35.0
전문직 후견인	9.0	14.0	...	36.5	41.4	44.4	51.5	57.8	65.0

※ 자료: 각 년도 성년후견 관계사건의 개황,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사법서사는 27%, 변호사는 24%, 사회복지사는 23%로 증가한 수치이며, 제3자 후견인 선임건수는 전체 사안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加藤雅信, 『成年後見制度の充實と, 不祥事防止』, 『民事判例V』, 現代民事判例研究會編, 2012年度前期, 101面; 淺香龍太・内田哲也, 『後見制度支援信託の目的と運用』, 『金融法務事情』, 第1939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12, 31面・33面).

Ⅲ. 일본에서 전문직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 실태

1. 전문직후견인의 부정행위

요미우리 신문 2010년 3월 17일자에 의하면 친족 후견인에 의한 업무상 횡령 사건과 전문직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최고재판소에 의해 부정행위나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성년후견인이 해임된 건수가 2000년 37건에서 2008년에는 257건으로 급증하였고, 2010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생한 부정행위 건수도 538건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 총액은 무려 52억 6,000만엔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산을 착복하여 해임되더라도 이를 변제하면 사건화 되지 않고,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 실제로 발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2년 2월부터 후견지원신탁제도¹⁴⁾를 도입하여 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후견지원신탁제도는 친족후견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변호사·사법서사·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전문직 후견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직 후견의 경우에도 부정행위는 발생하고, 그 발생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현재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간 변호사의 부정행위 2건, 사법서사 2건, 사회복지사 2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전문직 후견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다. 발각된 사건이 전부가 아닐 것으로 추측되고, 성년후견제도의 비즈니스화를 통하여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부정행위 의도를 가진 성년후견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날로 심각해 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는 피후견인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고, 경제적 불

13) 2011년까지 후생노동성의 모델 사업으로서 전문조직에 의해 양성 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정재판소에서 일반시민을 이른바 자원봉사로, 제3자 후견인의 입장에서 성년후견인 등에 선임되는 '시민후견추진사업'이 개시되었다(http://www.mhlw.go.jp/sei_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shiminkouken/index.html).

14) 후견지원신탁제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IV-3. 참조.

항 등으로 성년후견인이 여러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되며, 특히 부정행위가 즉시 발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유혹에 더욱 쉽게 빠져들게 될 것이다.¹⁵⁾ 물론 대다수의 전문직 후견인이 성년후견인으로써 후견업무에 충실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문직 후견인의 부정행위가 드물다고도 할 수 없으며, 그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¹⁶⁾ 그 대책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문직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례

지난 2011년 6월 16일에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¹⁷⁾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도중 피후견인 명의의 예금을 해약하고, 피후견인의 계좌에서 1,510만엔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었다.¹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나고야지점 특수부는 이 변호사를 업무상 횡령, 무인사문서 변조·동행사죄로 기소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하였고, 재판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집행유예가 내려진 이유는 성년후견인의 배우자가 횡령액 전액을 배상하였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것은 2008년 6월로서, 당시 가정재판소에서 변호사회에 후견인 추천을 의뢰하였고, 의뢰를 받은 변호사회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등록되어 있는 후보자 중 이를 선임한 것이었다.¹⁹⁾ 이 변호사의 횡령행위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지 1년여 만인 2009년 7월 6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피후견인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160만엔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7월 22일부터 다음해 9월 26일까지 우체국 보통예금 계좌에서 1,350만엔을 27회에 걸쳐 인출하는 등 총 28회에 걸쳐 횡

15) 전병주·최은영, “고령화 사회에 있어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실태 및 한국에의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3.8, 393면.

16) 淺香龍太·內田哲也, “後見制度支援信託の目的と運用”, 「市民と法」第76號, 2012, 13面, 17面.

17) 이 변호사는 35세이고,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7년 12월에 변호사 등록을 한 자로서, 모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정규교원은 아니었지만 모의고사 문제 등 수험지도를 위한 강의를 하는 지도역(指導役)을 맡고 있었다(주니치신문(中日新聞) 2011년 6월 16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11년 6월 16일자 참조).

18) 주니치신문(中日新聞) 2011년 6월 16일자, 2011년 6월 18일자 참조.

19)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11년 6월 16일자, 2011년 6월 17일자 참조.

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²⁰⁾ 횡령한 돈은 경마에 600만엔 이상을, 주식투자에 300만엔을 사용하였으며, 친족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²¹⁾ 당해 사건의 피후견인은 2010년 5월에 사망하였는데, 이 때 변호사는 상속인 유가족에게 “복수의 계좌의 잔고를 합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한 뒤 통장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법적으로 피후견인이 사망한 지 2개월 이내에 가정재판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출하였으며, 피후견인이 사망한 후에도 4개월 간 18회에 걸쳐 현금 900만엔을 인출하는 등 횡령행위는 계속되었다.²²⁾ 2010년 12월에는 후견인 업무종료 절차 진행과정에서 계좌 입금일을 조작하는 등 복사본을 가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발각되었으며, 이를 발견한 가정재판소에 의해 2011년 6월 2일 나고야지점에 고발되었다.²³⁾

2011년 3월에는 사법서사 성년후견인이 약 4,000만엔을 횡령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짓밟고, 교묘한 수법으로 빼돌린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이를 동정할 이유는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2010년에는 사회복지사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예금계좌에서 1,900만엔을 인출한 횡령사건도 있었다.²⁴⁾ 최근 2015년에도 83세의 여성 치매노인의 부동산과 주식을 무단으로 매도하고, 예금 1,400만엔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변호사 성년후견인이 체포되는가 하면,²⁵⁾ 성년후견인으로서 재산관리를 하던 82세 남성 노인의 예금 계좌에서 500만엔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자

20)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11년 6월 18일자 참조.

21) 주니치신문(中日新聞) 2011년 6월 18일자, 2011년 7월 2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11년 7월 2일자 참조.

22) 주니치신문(中日新聞) 2011년 6월 17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11년 7월 2일자 참조.

23)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11년 6월 17일자 참조.

24) 이 사건에서 사회복지사는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80대 치매 노인의 계좌에서 20회에 걸쳐 총 1,500만엔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서 12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여성의 계좌에서 약 400만엔을 횡령하여 2010년 12월 2일에 체포되었다. 횡령한 돈은 유흥비로 탕진되었다고 한다.

25)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15년 7월 3일자(<http://www.asahi.com/articles/DA3S11838757.html>), 2015년 7월 22일자(<http://www.asahi.com/articles/DA3S11874782.html?iref=reca>) 참조.

신의 계좌로 약 700만엔을 이체시킨 혐의로 전직 현의회 의원(횡령 당시 의원)을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²⁶⁾ 일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치매 등으로 인한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이 횡령하는 비리의 피해액은 2014년 말까지 4년 반 만²⁷⁾에 무려 196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친족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지만,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 후견인에 의한 피해도 11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⁸⁾

IV.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성년후견인에 의한 업무상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친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 본인을 위한 재산관리라는 인식조차 약해서 의도하지 않은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⁹⁾ 이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2년 2월부터 후견지원신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³⁰⁾ 이는 친족후견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후견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전문직 후견인에 의한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각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 피해액이 수백 억엔에 달하는 등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의 입법자도 이러한 것을 어느 정

26)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15년 7월 8일자(<http://www.asahi.com/articles/ASH785JQQH78ULOB010.html?iref=reca>) 참조.

27) 일본에서 성년후견인의 횡령 등 부정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 성년후견제도 시행 10년째 되는 해인 2010년으로 보인다.

28)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15년 7월 22일자(<http://www.asahi.com/articles/photo/AS20150722002253.html>) 참조.

29) 加藤雅信, 前掲 “成年後見制度の充實と, 不祥事防止”, 100面.

30) 寺本恵, “後見制度支援信託の概要”, 「金融法務事情」, 第1939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12, 41面 以下; 淺香龍太・内田哲也, “後見制度支援信託の目的と運用”, 「金融法務事情」, 第1939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12, 30面 以下.

도 예상하였기 때문에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였다.³¹⁾ 그런데 일본에서 후견감독인 제도의 이용률은 성년후견인의 이용률에 비하면 너무나도 저조한 실정이고, 결국 감독인 역할은 가정재판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후견감독인은 임의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임되어 지기 때문이다. 가정재판소는 성년후견인(또는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만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가정재판소에서 성년후견인 등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정재판소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강화를 도모하여야 하지만, 재정상황을 무시한 채 인원을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설령 증원한다 하더라도 부적격자가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도 없겠지만, 완전한 제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빠져나가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완전한 제도보다는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현실 가능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후견인 감독센터의 설립

일본의 성년후견인 감독기관으로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다.³²⁾ 후견인이 친족으로 구성될 경우 피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재판소에서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후견감독인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후견인에게 안심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³⁾ 일본의 전문직 후견인은 주로 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선임되고 있으며, 전문직 후견인 단체로는 일본 사법서사연합회의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와 일본 사회복지사회의 ‘성년후견센터 파트너’가 설립되어 후견업무를 담

31) 조승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후견제도의 보완으로서 사회적 후견-”, 『민주법학』 제52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3.7, 127-128면.

32) 편의상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을 총칭하여 성년후견감독이라 칭하겠다.

33) 加藤雅信, 前掲 “成年後見制度の充實と, 不祥事防止”, 107面.

당하고 있다.³⁴⁾ 성년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인 감독센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가정재판소에서 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재판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과 기능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후견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일본에서는 ‘NPO법인 변호사 후견인 감독센터’ 설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유언·상속과 관련하여 ‘NPO법인 유언·상속 리걸 네트워크’가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한 것으로, 반드시 변호사 단체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설립한 후 전국 단위인 일본변호사회로 확산시키면 좋겠지만, 변호사회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자끼리 모여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³⁵⁾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년후견감독인제도가 있다. 가정법원에서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을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임의후견제도를 제외한 후견감독인은 임의기관이어서 감독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후견인의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³⁶⁾ 가정법원에서 이를 담당하기에는 업무 과중의 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견인 감독센터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후견인 감독센터는 우선 1차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그 후에 가정법원이 최종적으로 감독기능을 완수하게 된다면, 이는 이른바, 이중적 감독체제³⁷⁾로서 성년후견인 감독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견인 감독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기 보다는 전문직 후견인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직 후견인 단체로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운영 중에 있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주도한 단체로 지난

34) 현재까지 변호사 단체는 설립되어 있지 않고,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단체설립과 관련한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5) 加藤雅信, 前掲 “成年後見制度の充實と, 不祥事防止”, 110面.

36) 김상목·윤성호, “성년후견제도의 검토 및 향후 과제”, 「법학연구」 제50집, 한국법학회, 2013.6, 534면.

37) 전병주·최은영, 전계논문, 402면.

2011년에 성년후견인을 교육·양성하고 가정법원에 후보자 명단을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전문직 후견인 단체를 보다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조직화시킴으로써 법인의 구성원이 행하는 후견업무에 대해 1차적 감독권한까지 부여한다면 법인 내에서는 물론 법인 상호간의 경쟁을 통한 감시로까지 이어져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후견인 감독센터에서 성년후견인 1인당 몇 명의 피후견인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법에서 의사, 간호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년후견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미 후견감독인으로 선임이 된 자가 그 이후에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사임하도록 하면 될 것이고, 동시에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후견인 사퇴권고를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후견인 감독센터는 후견인 사퇴권고에 대한 취지를 가정법원과 후견개시 신청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자도 배제할 수 있고, 피후견인이 안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성년후견의 비즈니스화를 통해 취업난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⁸⁾

한편, 후견인 감독센터는 감독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이 성년후견인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 후견인 감독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후견인 감독센터는 진상 조사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한 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전문직 후견인 단체 지부에서 후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부장의 책임 하에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38) 성년후견제도의 비즈니스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복지제도로써 후견제도의 가능성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후견이 필요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치매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사실상 개별적인 유상후견제도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비즈니스화가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를 더욱더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익적 후견으로서 모든 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회복지와 유기적으로 연동된 후견제도, 다시 말해 현재의 유상 후견제도를 보완하는 후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적 후견제도에 대해서는 박근수·이충은, 전계논문, 참조.

이와 별도로 중앙회에서는 매년 감사를 통하여 성년후견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상호보증제도의 의무화

후견인감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후견감독인을 맡는 조건으로 각 후견인에게 사고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의 경우 현재 변호사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강제사항도 아니며, 가입률도 2010년 기준 전체 변호사의 11%에 그친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변호사 책임보험은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와 같은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보험사고로 보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구제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고보험 가입의 의무화와 더불어 성년후견인 간의 상호보증을 통한 연대책임 시스템을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상호보증 연대책임 시스템은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농촌은행)에서 피대출자가 상호 연대책임을 짐으로써 무담보 대출을 실현한 방법과 동일한 방안으로 후견인 감독센터와 계약을 하고 있는 모든 성년후견인들의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을 한 후 후견인 감독센터의 후견감독인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변의 신용을 얻지 못하는 자를 성년후견인이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 억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물적 담보를 제공하거나, 가등기를 통하여 예방효과를 얻을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신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인적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3. 후견신탁제도의 도입

일본은 2012년 2월부터 후견지원신탁제도를 도입하여 (친족)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후견지원신탁제도란 피후견인의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은행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신탁은행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일정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체시키고, 그 부분에 한하여 성년후견인이 사용·관리하게 되며, 당장 사용하지

않는 큰 재산에 대해서는 원금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후견지원신탁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신탁계약의 체결, 일시금 교부, 해약 등에 있어서 가정재판소의 사전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성년후견인은 신탁계약에서부터 많은 지출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나아가 신탁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도 가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해야 하므로 성년후견인의 횡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³⁹⁾ 성년후견인의 사무감독은 성년후견감독인이 담당하지만, 성년후견감독인 선임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가정재판소에서 감독업무를 담당하여야 하지만 실제 가정재판소에서 이를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후견지원신탁제도는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견지원신탁제도는 친족후견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신탁할 수 있는 재산도 금전에 한하게 된다. 전문직 후견인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후견지원신탁제도는 전문직 후견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성격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보호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⁰⁾ 부동산관리 신탁의 경우, 피후견인은 수탁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물리적 관리뿐만 아니라, 신탁재산과 관련한 납세, 거래, 장부의 기재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피후견인의 판단력이 감소하거나 상실하게 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은 경솔하게 처분되거나, 사취당할 염려가 없게 된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소유가 아니고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독립하여 보호되기 때문이다.⁴¹⁾ 다만,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단순히 재산의 관리 등을 위탁하

39) 일본의 후견제도 지원신탁제도에 대해서는 이충은, “일본의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법과정책』, 제21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5.3, 225-226면 참조.

40) 전병주·최은영, 전계논문, 404면.

는 것을 넘어서 권리 자체를 이전한다는 점에서 이를 망설이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함께 겸하게 되는 방법⁴²⁾을 취한다면, 신탁 설정 후에도 자신이 직접 재산을 보유하면서 신탁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⁴³⁾ 위탁자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는 방법은 위탁자가 단독수탁자가 되는 방법과 위탁자가 공동수탁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양자 모두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조). 하지만, 전자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가 어렵게 된다면, 더 이상 신탁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이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신탁자를 선임해 둔다 하더라도 전수탁자의 임무 종료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 신탁사무의 처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동수탁자가 되는 형태가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공동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고, 나중에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가 어려워지게 되면 다른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면 신탁재산 관리에 있어서 공백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무능력자 제도와는 달리 의사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현시키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⁴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41)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으며(신탁법 제22조 제1항),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도 아니한다(동법 제24조).

42)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자가 자기의 생존 중에 자신이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그 재산을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해 관리, 처분, 운용한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설정되는 신탁을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설정 또는 자기신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25일에 신탁법의 개정으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43) 최수정, “고령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신탁의 기능과 활용을 중심으로-”, 『법조』, 제64권 제3호, 법조협회, 2015.3, 56-57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도 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성년후견제도가 향후 이루고 있는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제도 시행이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을 모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 특히 실무상의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를 미리 대비함으로써 실효성을 갖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된다는 점에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높고,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이 유사한 일본의 현상과 문제점을 살펴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년후견 사건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배임과 착복 등 부정행위의 발생도 함께 증가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일본의 현상과 문제점을 통한 시사점은 분명 존재할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성년후견제도가 실시된 이래 후견제도의 이용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에는 과거 금치산제도 시행 당시보다 약 10배가 증가하였다.⁴⁵⁾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이용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성년후견인의 배임과 착복 등 부정행위까지도 함께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일본의 입법자도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여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지만, 일본에서의 후견감독인 제도의 이용률은 성년후견인의 이용률에 비하여 너무나 저조한 실정이다.⁴⁶⁾ 이러한 원인으로는 가정재판소가 직접 후견인을 감독하고, 후견감독인은 필요

44) 조승현, 전계논문, 131면.

45) 日本最高裁判事務總局家庭局, 成年後見關係事件の概況, 2011年 1月-12月; 赤沼康弘, “信託と成年後見制度”, Jurist, 제1450호, 2013.2, 29面.

46)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 대부분 법정후견에 있어서 가정재판소에서 감독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2011년에 법정후견인의 선임등기 건수가 25,905건인데 비해 후견감독인 선임 건수는 1,706건에 불과하고, 임의후견의 경우도 2000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등기건수가 49,696건인 것에 비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건수는 3,280건에 불과하다(岡孝, 「成年後見制度に對する斷想」, 法學教室, 2012.5, 8面).

에 따라 그 감독을 보강하는 임의의 설치기관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재판소의 조직 및 기능면에서의 역부족 현상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후견사건을 적절하게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피후견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법원 상황으로도 개정 민법상 부여된 과제를 소화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⁴⁷⁾ 이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제도적 장치로써 첫째, 후견인 감독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인 전문직 후견인 단체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한 후 가정법원에서 최종적인 감독기능을 완수하는 이른바, 이중 감독체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전문직 후견인 단체를 보다 더 활성화·조직화 시키게 된다면 법인의 구성원이 행하는 후견업무에 대해서까지 1차적 감독권한을 부여 시킬 수 있어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가정법원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성년후견인 간의 상호보증을 통한 연대책임 시스템을 채용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후견인 감독센터와 계약을 하고 있는 모든 성년후견인들의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을 한 후 후견인 감독센터의 후견감독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담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는 신용이 없는 자이고, 성격적으로도 성년후견인 적격성을 흠결할 가능성이 높아 부정행위 등을 일으킬 위험이 큰 자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후견신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12년 2월부터 후견지원신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후견지원신탁제도는 피후견인의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은행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보충적으로 성년후견인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동 제도를 친족후견의 경우에 한정하고, 신탁의 대상도 금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지원신탁제도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한다면 충분히 도입의 실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전문직 후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도 지

47) 조승현, 전제논문, 126면.

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성격을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문직 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후견인 감독센터 설립, 상호보증제도의 의무화, 후견 신탁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제안이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가 건전한 형태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최소화 시킬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가 최소화된 전문직 후견인의 확립에 부족하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상목·윤성호, “성년후견제도의 검토 및 향후 과제”, 『법학연구』 제50집, 한국법학회, 2013.6.
- 김상찬·이충은, “성년후견제도 입법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법과정책』 제15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9.2.
- 박근수·이충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제도로서의 성년후견제도”, 『법학논고』 제4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2.
- 이충은, “일본의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법과정책』 제21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5.3.
- 이충은·박규용, “일본의 실무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7집, 한국법학회, 2015.3.
- 전병주·최은영, “고령화 사회에 있어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실태 및 한국에의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3.8.
- 최수정, “고령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신탁의 기능과 활용을 중심으로-”, 『법조』 제64권 제3호, 법조협회, 2015.3.
- 岡孝, 「成年後見制度に對る斷想」, 法學教室, 2012.5.

新井誠・赤沼康弘・大貫正男編,「成年後見制度-法の理論と實務」,有斐閣,2006.
長谷川泰造,“成年後見Q&A”,有斐閣,1998.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成年後見關係事件の概況-平成26年1月~12月-」,2015.
加藤雅信,“成年後見制度の充實と,不祥事防止”,「民事判例V」,現代民事判例研究會編,2012年度 前期.

宮下修一,“現場にみる成年後見制度の問題點”,「民事判例V」,現代民事判例研究會編,2012年度 前期.

寺本恵,“後見制度支援信託の概要”,「金融法務事情」,第1939號,金融財政事情研究會,2012.

赤沼康弘,“信託と成年後見制度”,Jurist,第1450號,2013.2.

淺香龍太・内田哲也,“後見制度支援信託の目的と運用”,「金融法務事情」,第1939號,金融財政事情研究會,2012.

淺香龍太・内田哲也,“後見制度支援信託の目的と運用”,「市民と法」,第76號,2012.

[Abstract]

Implications of Japan's adult guardianship system implementation status on South Korea^{***}

-Centering on the misbehaviors of guardians with specialized jobs-

Lee, Choong-Eun

Lecturer, Department of Law,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to protect those with weaker assessment ability due to advanced age and illness and help them lead a normal dail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4S1A5B5A01013906)

life. The purpose of the system, unlike the existing scheme for the incompetent, is to prevent any social stigma on people lacking a decision making ability and ensure their right to make a decision on their own to the maximum extent with a view to realize the wellbeing of the wards. South Korea already became an aging society in 2000 and its elderly population is predi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In this situation, the adult guardianship scheme will play a huge role in the future as well. Therefore, the scheme should be closely investigated for its sound functionality provision and stable early settlement in the society.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Japan marks 15th year of implementation this year and since its execution, the number of cases dealt with under the scheme has grown every year. In this aspect, it may seem that the system achieved its legal purposes. But the problem is that what has increased is not only the number of cases but also relevant fraudulent behaviors of adult guardians such as malpractices and embezzlements. It is certain that not all of such abusive behaviors have been uncovered so far. And ill-intended adult guardians increase as they gradually recognize the guardianship system as a business. For this reason, the problems seem to grow more serious. Especially in a situation where the age of wards grows older and the social conditions such as slow economy make more people easily succumb to evil temptations as fraudulent behaviors tend not to be detected instantly but later on, after a certain time. Just like Japan, South Korea experiences the continuously rising number of cases dealt with under the adult guardianship scheme. Together with this trend, also relevant embezzlement, misappropriation, and other violations are expected to move up as well. In this recognition, the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stable and successful landing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by scrutiniz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Japan's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exploring corresponding preventive measures.

Key words : Japan, adult guardianship system, guardians with specialized job, guardianship trust system, guardian monitoring center